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325
----------	------

2021년 6월 21일
환경수자원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1년 4월 2일, 봉양순 의원
- 나. 회부일자 : 2021년 4월 6일
- 다. 상정일자 : 제301회 정례회 서울특별시의회 제3차
환경수자원위원회
(2021년 6월 21일 상정·원안 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봉양순 의원)

가. 제안이유

- 정수기를 철거하고 아리수 음수대를 설치하여 수돗물을 마시는 학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및 국공립 유치원에 대하여 수도요금을 감면하지 않고 상수도사업본부가 일괄적으로 위임관리를 함에 따라 해당 음수대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음.

나. 주요골자

- 음수대 위탁관리 전면 시행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 철회 및 제외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음수대 무단철거 또는 정수기 사용 등에 따른 제재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4.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이재효)

가. 개요

-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제31조제1항제6호의 ‘음수대 설치 학교 등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조항 삭제에 따른 현행 조례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1) 음수대 설치 교육시설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철회 및 제외 규정 삭제

- 안 제9조제4항 및 제5항은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개정을 통해 아리수 음수대 설치 학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및 국공립 유치원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조항을 삭제함에 따라 현행 조례 제9조 중 수도요금 감면 철회 및 제외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음.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 9 조(관리) ① 음수대의 청소 등 위생관리 및 고장 등 유지관리에 대한 조치는 음수대가 설치되어 있는 기관에서 하여야 한다.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설치된 음수대 중에서 냉온 기능, 수압 기능을 위한 장치 이상 등 중대한 고장이 발생하여 음수대로서의 기능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시장은 교체, 수리 및 비용지원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③ 제 6 조에 따라 설치된 음수대 중 내용연수가 경과된 음수대에 대하여는 연차별 계획에 따른 교체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진할 수 있다.

④ 제 1 항에 따른 음수대의 청소 등 위생관리, 고장 및 철거 등에 대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이하 "수도조례"라 한다)제 31 조제 1 항제 6 호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을 철회할 수 있다.

⑤ 수도조례 제 31 조제 1 항제 6 호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 대상은 음수대의 정기적인 유지관리 업무를 시장과 협의하여 위임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수도요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2) 음수대 무단철거 또는 정수기 사용 등에 따른 제재 규정 마련

- 현행 조례 제9조에서는 상수도사업본부가 설치한 음수대의 적절한 관리와 이용을 위한 제재 수단으로 음수대를 무단철거하거나 정수기를 사용하는 경우 수도요금 감면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음수대 설치 학교 등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조항이 삭제되어 음수대 무단철거나 정수기 사용 등에 대한 제재 수단이 상실됨에 따라 별도 제재 규정 마련이 필요할 것임.
- 따라서 동 조례 개정으로 음수대 관리를 상수도사업본부 위임 관리로 일원화하여 관리 비용을 상수도사업본부가 일체 부담함에 따라 음수대 무단철거 및 위생관리 미흡, 정수기 사용에 대한 제재 수단으로 음수대 관리 비용 지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없음

7. 수정안 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 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3항) 중 “제6조에 따라 설치된 음수대 중”을 “시장은”으로, “범위 내에서”를 “범위에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에 따라 설치된 음수대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 및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국공립 유치원은 음수대의 정기적인 유지관리 업무를 시장과 협의하여 위임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위임관리를 받는 기관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음수대 설치(연차별 계획에 따른 교체 포함)를 보류하거나 냉온 및 수압기능을 위한 장치 이상 등 중대한 고장 발생에 따른 교체, 수리 및 비용지원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음수대의 청소 등 위생관리가 미흡한 경우
2. 음수대를 무단 철거하는 경우
3. 정수기를 설치하는 경우

부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9조(관리) ① (생 략)</p> <p><u>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설치된 음수대 중에서 냉온 기능, 수압 기능을 위한 장치 이상 등 중대한 고장이 발생하여 음수대로서의 기능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시장은 교체, 수리 및 비용지원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u></p> <p><u><신 설></u></p> <p><u>③ 제6조에 따라 설치된 음수대 중 내용연수가 경과된 음수대에 대하여는 연차별 계획에 따른 교체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진할 수 있다.</u></p> <p><u>④ 제1항에 따른 음수대의 청소 등 위생관리, 고장 및 철거 등에 대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이하 “수도조례”라 한다)제3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을 철회할 수 있다.</u></p>	<p>제9조(관리) ① (현행과 같음)</p> <p><u><삭 제></u></p> <p><u>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에 따라 설치된 음수대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및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국공립 유치원은 음수대의 정기적인 유지관리 업무를 시장과 협의하여 위임할 수 있다.</u></p> <p><u>② 시장은 ----- ----- ----- 범위에서 ----- --.</u></p> <p><u>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위임관리를 받는 기관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음수대 설치(연차별 계획에 따른 교체 포함)를 보류하거나 냉온 및 수압기능을 위한 장치 이상 등 중대한 고장 발생에 따른</u></p>

⑤ 수도조례 제3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 대상은 음수대의 정기적인 유지관리 업무를 시장과 협의하여 위임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수도요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교체, 수리 및 비용지원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음수대의 청소 등 위생관리가 미흡한 경우
2. 음수대를 무단 철거하는 경우
3. 정수기를 설치하는 경우

<삭 제>